# 「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」 지원사업 안내

### □ 추진배경

- 고금리·고물가 장기화로, 내수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매출\* 감소 \* 소상공인 실태조사(백만원) ('20) 228 → ('21) 225 → ('22) 234 → ('23) 199
- 업계는 고정비용의 폭 넓은 지원 요구와, 증빙부담\* 완화 및 신속 지원 효과\*\*를 위해 기존 증빙·검증이 아닌 새로운 방식 도입 필요
  - \* 각종 고정비용 고지서, 비용신청서, 영업용 확인을 위한 임대차 계약 서류 등
    \*\* (신청~지급) 전기요금(→3주내외), 배달·택배비 확인지급(→3주+α), 크레딧(→7일내외)
  - ☞ 소상공인이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50만원 범위 에서 중빙자료 없이 자율 사용하는 「부담경감 크레딧」 지원

#### □ 지원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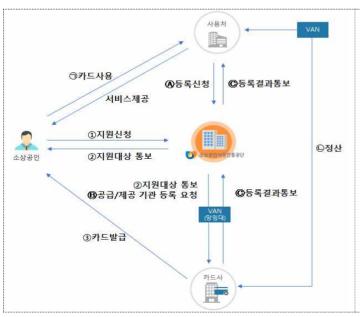
- (총 사업비) 1조 5,660억원(직접 1조 5,555, 간접 105), '25년 한시
- (지원금액) 소상공인 1인당 50만원
- (지원방식) 기존 카드(신용·체크) 등록 또는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등록된 사용처에 50만원 한도액 내에서 사용
  - \* 참여 카드사(9개): 국민, BC, 농협, 롯데, 삼성, 신한, 우리, 하나, 현대
- □ **지원대상** : **311.1만개사**(연 매출액 3억 이하 366만개사 × 85% 가정 시)
  - **(개업일)** '25.5.1.(추경 확정일) 이전 개업 소상공인
  - (활동 여부) 신청일 기준 휴·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(국세청 DB 기준)
  - (매출액 기준) '24년 또는 '25년 연 매출액<sup>\*</sup> 0원 초과 3억원 이하
    - \* 사업장현황신고서 수입금액(매출), 표준재무제표증명 매출액,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
  - (업종)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\*이 아닌 모든 업종
    - \* 유흥업, 담배 중개업,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,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
  - (사업자 기준) 개인·법인 사업자
  - (다수 사업체) 1인이 다수 사업체(법인·개인 무관)의 대표라도 한 곳만 신청 가능,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대표 1인만 신청 가능

### □ <mark>지원내용</mark> : 공과금, 보험료

- (공과금) 필수 지출 공과금인 전기·가스·수도요금 지원
  - \* 가맹점 코드를 활용 전기(한전), 가스요금(지역별 도시가스), 수도(지역별 상하수도), 4대 보험(국민·건강·고용·산재)으로 사용처 한정
- **(보험료) 4대 보험료**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

#### □ 지원절차

- ① (대상선정) 소상공인이 온라인 신청(<sup>가청</sup>부담경감크레딧.kr) → 소진 공이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카드사에 명단 제공
  - \* (원칙) 국세청 과세정보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적격심사 진행 (예외) 과세정보가 없는 신생 사업장 등은 추가 증빙자료를 통해 자격 판단
- ② (카드등록) 소상공인이 기존 보유한 신용·체크카드를 등록하거나, 신용·체크카드 이용이 어려운 경우 카드사에 선불카드\* 발급 요청
  - \* 계좌압류, 저신용(예. 舊 7등급 이하), 그 밖의 사유로 계좌개설이 어려운 사례 有
- ③ (크레딧 사용) 소상공인이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 및 보험료 결제 시, 한도 50만원 내에서 크레딧 자동 차감
  - 한도 50만원 초과 또는 공과금·보험료 외 결제금액은 소상공인이 부담



- ◆ 크레딧 지원신청: 소상공인 →
   ①신청 → 소진공(심사) → ②지원
   대상 통보 → 소상공인/카드사 →
   ③카드발급(카드사)
- ◆ **카드 등록** : 소상공인이 보유한 카드를 등록하거나 신규 카드 발급
- ◆ 크레딧 사용 : 소상공인→¬카드 사용→사용처↔□정산↔카드사

## □ <mark>향후일정</mark> (안)

○ 공고('25.6.20) → 신청·접수(7,14~11.28) → 크레딧 사용(7.21.~12.31)